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16 선고 2020가합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배준성

변론 종결 2020. 6. 25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93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 피고의 광주은행 계좌에 205,932,848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 3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4. 30. 관계인집회에서 원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회생계획과 달리 준비연도(2012년도)에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상준 비연도의 변제 예정분회생담보권 1, 416, 000, 000원중 42,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14. 6. 11.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마. 대구지방법원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2014하합14)를 하 였고,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D의 말에 속아 피고의 계좌에 205,932,848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D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D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5,932,84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당사자가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제359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4. 30. 관계인집회에서 원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된 사실, 원고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14. 6.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하고 2014. 6. 26.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한 사실,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 6. 15. 선고 2017 다289828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판사 인자한판사 조재 혁